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74회 임시회 (2025. 3.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 하 나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25-16
- 나. 제안자: 권인순 의원 외 8인
- 다. 제안일자: 2025년 3월 10일(월)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5년 3월 11일(화)

2. 제안사유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대안교육’, ‘대안교육기관’ 용어 정의 정비(안 제2조)
- 나. 위원회 명칭 정비(안 제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합 의 : 교육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 협의 완료
- 라. 입법예고 : 2025. 2. 19. ~ 2. 24. (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보고

- 동 조례 개정안은 2025년 3월 10일 권인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안되어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개정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 ‘대안교육’, ‘대안교육기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안 제2조제2호는 “대안교육”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으로, 안 제2조제3호는 “대안교육기관”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법인 또는 단체”로 정의하려는 것으로, 자치조례의 경우 유사한 법령에 있는 용어 규정을 그대로 다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법령의 정의 규정에 따른다”고 표현한다는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근거한 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2022, 법제처) 중 발췌, 95p >

5) 자치조례에서 법령의 정의와 동일한 내용의 정의를 두는 경우의 표현방식

위임조례의 경우 상위법령의 용어정의를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므로 해당 조례에서 다시 용어정의를 하지 않지만, 자치조례의 경우에는 유사한 법령에 있는 용어정의를 가져와 동일하게 정의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법령의 용어정의 규정을 그대로 다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OO법」 제O조에 따른다.”고 표현한다.

- 그리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21. 3. 23. 공포, '21. 9. 24. 시행)되어 “운영위원회”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¹⁾에 따라,
 - 안 제5조제2항 중 “마포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수정하였음.
- 이와 같이 검토한 바, 본 개정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법적 통일성 및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소관부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22. 7. 7.시행)하였으나, 동 조례의 위원회 명칭은 변경하지 않았음.
- 아울러, 상위법 개정('21. 9. 24. 시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 되었는바, 소관 조례의 완결성 유지를 위한 소관부서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1) 개정 사유: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

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3. 23.>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23.>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3. 23.>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23.>

[제목개정 2021. 3. 23.]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